

#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3340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18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」은 마포구 권역의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, 많은 아동들에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함께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통해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결합한 사회복지시설임
- 나. 거점형 키움센터는 초등아동의 자유로운 놀이와 쉼의 공간을 제공 할 뿐 아니라, 지역 내 아이돌봄 기관·자원을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초등돌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여기에 키즈카페를 결합하여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
- 다.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, 안전한 놀이와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,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
- 위치 : 마포구 노고산동 107-38 일대
- 규모 : 지상 3층, 전용면적  $999.82m^2$ (층 면적  $1,418.02m^2$ )
  - [키움센터]  $656.72m^2$ (199평) / [키즈카페]  $343.1m^2$ (104평)
- 조성방법 : 기부채납시설 활용
-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
  - [키움센터] 아동 110명 / 종사자 12명
  - [키즈카페] 아동 34명(회차별 인원) / 종사자 4명

#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·운영
  - 조직·인사관리, 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, 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관리
  - 초등돌봄 서비스 기획 및 문화·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
  - 초등돌봄 자원의 유기적 연계·조정 및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
  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
  - 양육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
- 위탁기간 : 5년(2026. 4. ~ 2031. 3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  - '25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('25.9.24.)
- '26년 소요예산(안) : 1,643백만원
  - [키움센터] 1,231백만원 / [키즈카페] 412백만원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### ○ 추진근거

- 아동복지법 제44조의2(다함께 돌봄센터)
- 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
-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 및 제7조의 2 (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 위탁)

### ○ 민간위탁 필요성

-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대규모의 시립 사회복지시설로 초등학생 대상 문화·놀이·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돌봄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또한,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,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·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 자원 활용이 필요함
- 서울형 키즈카페도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,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적,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[아동복지법 제44조의2(다함께 돌봄센터)]

-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 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  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  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 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 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# [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]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# [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]

-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# [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]

-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

##### [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 2(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)]

-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]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[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 위탁)]

-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하며, 위탁기간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정유진 (☎2133-4819)

김유나 (☎2133-4808)